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4

발의연월일: 2020. 06. 10.

발 의 자:김윤덕・이정문・조정식

이원택 • 신동근 • 한병도

정춘숙 · 신영대 · 이상직

이용호 · 윤준병 · 안호영

김수흥 · 김성주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 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.

해당 개정안은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를 '특례시'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고,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,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.

하지만,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 등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. 이는 기존 여건이 좋은 도시만 경쟁력이 더욱

강화되어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법률개정이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.

이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(道)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 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 여 지역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75조 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인구 50만 이상 대도시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
- 2.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
- 3.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
- ② 특례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5조(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)	제175조(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)
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	<u> </u>
치시를 제외한 <u>인구 50만 이상</u>	<u>다음 각 호의</u>
<u>대도시</u> 의 행정, 재정운영 및 국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
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하여는 그	<u>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</u>
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	
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	
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<u>1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</u>
<u><신 설></u>	2.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
	<u>소재지인 대도시</u>
<u><신 설></u>	3.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
	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
	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
	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
	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
<u><신 설></u>	② 특례시 및 인구 50만 이상
	대도시의 인구에 대한 산정기
	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